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34
----------	-------

발의연월일 : 2026. 3. 4.

발 의 자 : 이용우 · 신장식 · 장철민
민병덕 · 임미애 · 김남희
김남근 · 한준호 · 김 윤
백승아 · 전종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일체의 단체행동을 금지하여 교사와 공무원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실제 OECD 가입국가 대부분은 하위직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행위에 불과함.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 ILO는 거듭하여 우리 정부에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 왔음.

이에 「정당법」에서 교사와 공무원 등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면서, 교사와 공무원이 선출직공무원으로 출마하려는 경우 필요적으로 사직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 대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

하여 선거에 관한 공무원 등의 정치중립과 공무담임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무원이 하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공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은 선거운동이 아님을 명확하게 확인함(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 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언론인,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때에는 선거일 90일 전에 휴직을 신청하도록 하며 임용권자가 그 휴직신청을 반드시 허가하도록 함(안 제53조 및 안 제53조의2 신설).
- 다. 휴직을 신청하고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공무원·교원 등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당선되기 위한 행위’로 함(안 제60조 단서).
- 라. 현행법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선거일 전에도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호)에서 모든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현행 법상의 자구를 개정안의 체계에 맞게 정비함(안 제60조제1항제4호·제5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28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29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0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1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3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이 경우 제58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의 행위는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에 한정한다)에 따른 행위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제5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정무직공무원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입후보를 위한 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휴직을 신청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만,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

교의 교원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제53조의3(입후보를 위한 휴직의 효력) ① 제53조의2에 따라 휴직 중인 자는 그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기간이 끝난 자가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다”를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3조의2에 따라 휴직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당선되기 위한 행위에 한정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

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제53조의2에 따라 휴직을 신청한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제1항제5호 중 “第1項第2號 내지 제7호”를 “제1항제2호·제4호·제5호·제6호”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3조의2에 따라 휴직을 신청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9條(公務員의 中立義務 등) ① 公務員 기타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하는 者(機關·團體를 포함한다)는 選舉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選舉結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후단 신설>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 ----- ----- ----- ----- ----- . 이 경우 제58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의 행위는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에 한정한다)에 따른 행위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大統領選舉와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 國會議員이 그職을 가지고 立候補하는 경우와 地方議會議員選舉와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 ----- ----- ----- ----- . ----- ----- ----- ----- ----- -----

治團體의 議會議員이나 長이 그
職을 가지고 立候補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第2條(公
務員의 구분)에 規定된 國家
公務員과 「지방공무원법」
第2條(公務員의 區分)에 規定
된 地方公務員. 다만, 「정당
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
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政務職公
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생략)

3.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의 身分을 가진 者

4. ~ 6. (생략)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
호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私立學校
敎員

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
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
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

-----.

1.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
방공무원법」에 따른 정무직
공무원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6.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입후보를 위한 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휴직을 신청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다만,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신 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제53조의3(입후보를 위한 휴직의 효력) ① 제53조의2에 따라 휴직 중인 자는 그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기간이 끝난 자가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국가공무원법」 第2條(公務員의 구분)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 「지방공무원법」 第2條(公務員의 구분)에 規定된 地方公務員.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國會議員과 地方議會議員외의 政務職

자) ①-----

-----.

----- 아
니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3조의2에 따라 휴직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당선되기 위한 행위에 한정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4. -----

다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u>公務員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u> 5. 第53條(公務員 등의 立候補) 第1項第2號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者(제5호의 경우에는 그 常勤職員을 포함한다) <단서 신설> 6. ~ 9. (생략) ② (생략)	<u>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 · 선임비서관 · 비서관,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 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교원 및 제53조의2에 따라 휴직을 신청한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u> 5. ----- -- 제1항제2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포함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다만, 제53조의2에 따라 휴직을 신청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